

의안번호	제 11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역 내 감염병 관리·예방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한 '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'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
- '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'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(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상가 내)
※ 도⇔주식회사 대원디앤디, 임대차 계약 체결(3억원 / '25. 6. 30.까지)
- 위탁기간 : '23. 1. 1. ~ '24. 12. 31.(2년간)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전반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수탁자격 : 충청북도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
※ 지원단장: 예방의학,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
- 사업비 : 607백만원*(국비 303.5^{50%} 도비 303.5^{50%}) ※ '23년 기준
* 질병관리청, 2023 감염병예방관리 국고보조사업 가내시(안) 근거
- 위탁사무
 -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, 조사,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
 - 역학조사 지원, 공중보건위기(신종감염병, 생물테러 등) 대응 훈련 지원
 - 감염병 대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,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
- ※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(별첨)

3. 관계법령 발췌(붙임 2 참고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조의2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」 제8조(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·운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 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 -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

I 추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」 제8조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5조

II 위탁 개요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(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상가 내)
- 수탁대상 : 충청북도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
 - ※ 지원단장: 예방의학,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
- 위탁기간 : '23. 1. 1. ~ '24. 12. 31.(2년간)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전반
- 위탁사무
 -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, 조사,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
 - 역학조사 지원, 공중보건위기(신종감염병, 생물테러 등) 대응 훈련 지원
 - 감염병 대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,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최고점 기관 선정
 - ※ 1개 기관 응모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심사 실시
- 위탁금액 : 매년 예산편성액 이내 ※'23년 기준 607백만원
 - * 질병관리청, 감염병예방관리 국고보조사업 내시 등에 근거해 편성 예정

III

추진절차

① 의회동의(11월)	· 민간위탁 의회 동의 ※ 충청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회기 중
② 공개모집(12월)	· 모집공고 - (방법) 공개모집(공고일로부터 7일) - (자격) 충청북도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
③ 수탁심사(12월)	·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- (구성) 6~9명 정도 - (심사)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 등 - (선정) 심사기준표 의함(고득점자 선정)
④ 협약공증(12월)	· 협약체결 및 공증
⑤ 사무개시('23.1.1.~)	· 위·수탁사무 개시

IV

세부추진계획

① 의회보고

- 동의시기 :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중(11월)
- 동의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

<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①항 > 도지시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, **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

② 수탁기관 모집 공고

- 공고기간 : '22. 12월 중(7일간)
-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·결정(고득점자 선정)
- 신청자격
 - 충청북도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
 - ※ 지원단장: 예방의학,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

○ 위탁조건

- 관계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
-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,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, 의학전문대학원과 독립된 형태로 운영
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

○ 개최시기 : '22. 12월 중

- 구성인원 : 6 ~ 9명정도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민간 (전문가) 위촉
- 심사항목 : 신청기관의 전문성, 사업계획 적절성 등

○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

○ 수탁자 선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최고점 기관 선정

- ※ 1개 기관 응모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심사 실시

④ 협약체결 및 공증

○ 체결 시기 : '22. 12월

○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·인수

V **향후계획**

-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2. 11.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: '22. 12.
-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22. 12.

붙임 1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1부.

2. 관계법령 발췌 1부. 끝.

붙임1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□ 검토항목별 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건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○ 도내 감염병관리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감염병 관리·예방 분야는 전문적 사례관리, 맞춤형 대응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, 감염병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의과대학의 서비스 공급으로 지속·안정적 지원 가능
③ 경제적 효율성	○ 감염병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·운영할 예정이며,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감염병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사업 전문화 가능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최근 신종 감염병 출현 및 확산 등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중요성이 증가 ○ 감염병 대응은 관 또는 민간에서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, 민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행정처리 등 상호 협력·보완을 통한 대응이 필수임,

□ 검토결과 :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“적정”

- ‘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’은 관계법령*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관으로 도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업무는 충청북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축적된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 등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목적달성**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

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,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8조

** 지역 내 감염병 관리예방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

붙임2 관계법령 발췌
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

제8조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)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

제1조의2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·운영 등)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.

○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8조

제8조(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(이하 “감염병관리지원단”이라 한다.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, 개발, 조사,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
2. 감염병 대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, 보급 및 홍보
3. 감염병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4.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정보 제공
5.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
6.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
7. 도 내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
8. 공중보건위기(신종감염병, 생물테러 등) 대응 훈련 관한 사항
9. 도 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·훈련
10.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5조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